1.

행정소송의 의의

p.945

0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률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0

2.

행정소송의 한계

p.946

01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x)

: 0

02 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〇, ×)

: \times , 법령은 그 자체가 <u>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u> <u>다</u>. → 법령이라도 그 자체가 <u>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u> 있다.

03 법규명령 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

 $: \bigcirc$

p.947

01 판례는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

: ()

02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

: x ,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재량행위도 일종의 처분이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위법성, 즉 본안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판단을 통해 기각 또는 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p.948

01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더라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bigcirc, \times)

 $: \times ,$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to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처분성을 가지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02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bigcirc, \times)

: 0

03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 ×)

: × , <u>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u>. → <u>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u>.

p.949

01 대법원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 형성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x)

 $: \bigcirc$

02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bigcirc, \times)

: 0

03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

: \times , 부작위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소송(부작위청구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행정소송의 종류

p.950

01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소송이다. (○, ×)

 $: \bigcirc$

- 02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취소소송
-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③ 당사자소송
- ④ 기관소송
- ⑤ 무효등확인소송
- : ④ , →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에 속한다.
- 03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O, x)

: ()

0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 ×)

: × , 기관소송 → 민중소송

05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다. (○, ×)

- : × , →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다.
- 06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민중소송
- ② 기관소송
- ③ 예방적 금지소송
- ④ 항고소송
- : ③ , → 판례는 예방적 금지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07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bigcirc, \times) : × , 취소소송 → 항고소송
- 08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
- : \times , 당사자소송 → 주관적 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u>당사자소송은 항고소</u>송이 아니다.
- 09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은 모두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다. (〇, ×)

: 0

- 10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 ① 기관소송
- ② 당사자소송
- ③ 예방적 금지소송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④ , → <u>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항고소송을 취소소송</u>,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주관적 소송

p.951

01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

: 0

02 당사자소송은 대등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O, x)

 $: \bigcirc$

p.952

01 시립합창단원의 위촉은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O, x)

: (

02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〇, ×)

- : \times , <u>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u>. → <u>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u>.
- 03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판례에 따를 때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bigcirc, \times)

: 0

- 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
- : × , → <u>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결정은 행정</u> 처분이며 <u>「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u>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다.
- 05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 공무원연금법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bigcirc$

- 01 공무원연금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
- : × , <u>미지급퇴직연금</u>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u>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u>. →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02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O, x)

 $: \bigcirc$

03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 ×)

: 0

04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 \bigcirc$

- 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은 판례에 따를 때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
- : ×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은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 06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 → <u>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u>. → <u>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방부장관의 인정으로 인해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방부장관이 인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u>
- 07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 <u>명예퇴직수당액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u> 처분에 해당한다. →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08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

 $: \bigcirc$

p.954

- 01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이전의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 (○, ×)
- : × ,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의 법률관계이므로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 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상 당사 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02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령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〇, ×)
- :×, →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03 구 석탄산업법상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

 $: \bigcirc$

04 석탄산업법과 관련하여 피재근로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〇, ×)

: ()

- 05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판례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〇, ×)
- : × , → <u>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u> 사자소송의 대상이다.

p.955

0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당사자소

송의 대상이다. (○, ×)

 $: \bigcirc$

02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 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03 법령상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 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 : × , 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이미 존재와 범위 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 다.
- 04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 조세과오납부액에 대한 반환청구
- ② 공중보건의사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
- ③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
- ⑤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 부존재확인
- : ① , → 조세과오납부액에 대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05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 (○, x)

 $: \bigcirc$

06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

- 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환매금액 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x)
- : × ,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 다.
- 08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학생의 신분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신분・지위확인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이 다. (〇, ×)

 $: \bigcirc$

09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 0

p.956

- 01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이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고 그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
- : × , →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 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02 TV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의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

 $: \bigcirc$

0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 0

0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bigcirc, \times)

: 0

p.957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 0

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관할행정청의 인가 전이라면 조합원은 해당 총회결의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〇, ×)

: 0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 ×)

: x , <u>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u> 관리처분계획<u>안</u>에 대한 <u>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u>. →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u>관할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하고,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u>

04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지도 않고, 또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도 않고, 그 대신 처분 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관련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

: 0

p.958

01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x →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 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실정법상 근거규정이 있다.

3.

취소소송의 의의

p.972

01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

: 0

p.973

01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당해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이다. (○, ×)

: \times ,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당해 <u>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u>이다. →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u>당해 처분의 위</u>법성 일반이다.

02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 ×)

: × ,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u>원고의 '법적 주장'</u>이라고 보고 있다. → 판례는 <u>처분의 위법성 일반</u> (처분의 위법성 그 자체)을 소송물로 본다.

4.

재판관할

p.974

0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 ×)

: x , →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02 피고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다. (○, ×)

: 0

03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관할법원으로 될 수 있다. (〇, ×)

 $: \bigcirc$

04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

: 0

05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O, x)

: (

06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

: 0

07 토지의 수용 및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 , → 행정소송법은 토지관할에 관하여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관할은 그 성격상 <u>임</u> 의관할이 된다. 따라서 <u>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u>.

08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

 $: \bigcirc$

5.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p.976

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 (〇, ×)

 $: \bigcirc$

02 관련청구소송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O, x)

: \times , →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관련청구소송은 <u>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u>된 것으로 본다.

p.977

01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지 못한다. (〇, ×)

 $: \bigcirc$

02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만이

가능하고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u>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만이 가능</u>하고 →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u>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u>하고 <u>선택적 청구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u>.

p.978

- 01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times , 원고는 <u>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u> \to 원고는 <u>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u>수 있다.
- 0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은 관련청구소송에 해당된다. (○, ×)

: 0

- 03 甲은 A시장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소송은 국가배상청 구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〇, ×)
- : × , <u>취소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병합</u>할 수 있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은 <u>관련청구소송</u> 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 및 병합하는 것을 말한다.
- 04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된다. (○, ×)

 $: \bigcirc$

05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관련 청구가 병합되어야 한다. (○, ×)

: 0

06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〇, ×)

 $: \bigcirc$

6.

당사자능력

p.980

01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bigcirc, \times)

 $: \bigcirc$

02 자연물의 일부인 동·식물에게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0

- 03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x)
- : \times , → <u>국가</u>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u>기관위임사무</u>의 처리에 관하여 <u>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u>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04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O, x)

: \times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에서 <u>충북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u>력이 없다.

7.

원고

p.981

0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O, x)

: 0

02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

: 0

03 甲은 단순위법인 취소사유가 있는 A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 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면 그 소는 부적 법한 것이 된다. (〇, ×)

: ()

04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원고적격이 있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 0

05 사실심 단계에서는 원고적격을 구비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bigcirc$

0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

: 0

07 법인격 없는 단체도 대표자를 통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0

08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甲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주 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이에 불복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항고소송 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〇, ×)

: ()

p.982

01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 ×)

 $: \cap$

02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 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〇, ×)

: × , → <u>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u>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03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

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 ×)

 $: \bigcirc$

04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 건축법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 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한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 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

: 0

05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 구제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〇, ×)

: 0

p.983

- 01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바로 인정받지 못한다. (○, ×)
- \times ,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to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02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 ×)
- : x , → <u>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도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u>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u>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u>
- 03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 : ×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u>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u>에 의하여 보호되는 <u>개</u> 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04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개인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및 공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 : ○
- 05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해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유지로 지역주민회・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누리는 법률상 이익이다. (○, ×)
- : \times , → 절대보전지역 유지로 지역주민회・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01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 : × , → <u>1등급 권역의 인근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u>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u>반사적</u> 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02 하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는 행정소 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bigcirc, \times)
- : \times , → 구 주택법상 <u>입주자는 하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u>의 무효확인 및 <u>취소를 구하는 행</u> 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 03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다. (O, ×)

 $(x) \times (x) \to (x) + (x)$

04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

 $: \bigcirc$

p.985

01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〇, ×)

: 0

02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0

03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bigcirc, \times)

: ()

04 甲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행정청 A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甲과 乙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甲에 대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乙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bigcirc$

05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양수 후 명의변경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위반사유를 이유로 채석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 ×)

 $: \times , \to$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u>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u>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p.986

01 공매 등의 절차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관계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대해 종전 영업자는 제3자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times , \to$ 공매 등의 절차로 영업시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u>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를 신고</u>하여 관계행정청에 <u>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대해 종전 영업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u>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소유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〇, ×)

: ()

03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회원 C는 그 골프장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0

04 법인의 주주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

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bigcirc$

p.987

01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그 특허로 인하여 받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기업인 경우에는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 ×)

: × , → <u>기존업자가 특허업자</u>인 경우에는 특허로 받은 이익을 <u>법률상 이익으로</u> 보아 <u>원고적격을 인정</u>하고, <u>허가업자</u>인 경우에는 <u>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u>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u>원고적격을 부정</u>하고 있다(<u>경업자소송</u>).

02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0

03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부 중복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

: 0

04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 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 , → <u>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u>는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u>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u>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

05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의일부 중복으로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

 $: \bigcirc$

p.988

01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x) \times (x) \to (x) \times (x) (x)$

02 구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소정의 석탄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므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업자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 , → 구「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소정의 <u>석탄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u> <u>적 행정행위이므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u>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해도 이는 <u>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므로 신규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u>.

03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O, x)

: 0

04 한의사들이 가지는 한약조제권을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도 인정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한

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O, x)

 $: \bigcirc$

05 당초 병원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에서 병원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준 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병원경영자는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 ×)

 $: \bigcirc$

p.989

- 01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 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
- : \times , → 인·허가 등 <u>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u>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수익적 <u>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수익적 처분</u>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경원자소송).
- 02 甲에 대한 허가가 乙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 乙은 甲이 받은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〇, ×)

: ()

03 경원자소송(競願者訴訟)에서는 법적 자격의 흠결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거부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〇, ×)

: 0

- 04 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판결의 직접적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 → <u>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자가 상대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u> 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p.990

01 원자로시설부지 인근주민들이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에는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

: 0

02 토사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상의 이익은 토사채취허가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 ×)

 $: \bigcirc$

p.991

01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 ×)

: ()

02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사건에서 자연공원법령뿐만 아니라 허가와 불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령도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판시하여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

: 0

0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원고적격이 있다. (\bigcirc, \times)

: 0

04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

 $: \bigcirc$

05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다. (○, ×)

 $: \bigcirc$

p.992

01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 •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도 포함된다. (○, ×)

: × , → 비록 환경영향평가구역 안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 영향권 내에서 <u>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u>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추정되어 <u>원고적격이 인정</u>된다. 그러나 단지 그 <u>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u>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0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된 다. (○, ×)

: 0

03 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이익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 \bigcirc$

p.993

01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 ×)

: ()

02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 ×)

 $: \bigcirc$

p.994

01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 ()

02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0

03 제3자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속 된 피고인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〇, ×) $: \bigcirc$

04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접견신청의 대상자였던 미결수에 대해 판례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〇, ×)

: × , → <u>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u>에 대하여 그 <u>접견신청의 대상자였던 미결수</u>는 판례가 <u>취소소송의</u> 원고적격을 긍정한다.

05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〇, ×): 〇

06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인근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인근주민들이 더 나아가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

: × ,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나 침해될 위험이 종료되었다거나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버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인근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07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 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인근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0

p.995

01 운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부과처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사후 사실상 변상하여 줄 관계에 있는 운전기사는 원고적격이 있다. (〇, ×)

: \times , →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 <u>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u>이 있는 경우 당해 <u>운</u> 전기사는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02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 \times , →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u>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u>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03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동 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 부과처분 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〇, ×)

 $: \bigcirc$

04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bigcirc, \times)

: ()

05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에는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〇, ×)

 $(x) \rightarrow \frac{\text{대학생들은}}{\text{대학생들은}}$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frac{\text{교수}(\Delta)}{\text{임용서분의}}$ 위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p.996

01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O, x)

: 0

0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〇, ×)

: 0

03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 , → 자연인이 아닌 <u>재단법인인 甲 수녀원</u>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u>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u>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04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 ×)

: ()

05 부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교수는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 ×)

 $: \bigcirc$

p.997

01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〇, ×)

: 0

02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동법상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 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 ,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u>법률</u> 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u>법률상 이익이 인정</u>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u>사증발급 거부처분을</u>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u>원칙적으로</u>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u>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u>구별을 요한다.

03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O, x)

: × ,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중국국적 여성)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외국인(가수 유○○)이라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04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bigcirc$

05 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 ×)

 $: \bigcirc$

p.998

01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bigcirc$

1.

원고

p.997

01 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 (○, ×)

: 0

p.998

01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0

02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bigcirc$

p.999

01 시행규칙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소멸한 제재적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 (〇, ×)

: × , → <u>판례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든,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든,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든지를 불문하고 가중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소의 이익을 긍정</u>한다. 따라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소의 이익은 있다.

02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행정규칙에 의해 당해 처분의 존재가 가중처분의 전제가 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

: ()

03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times , → <u>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에서 가중사유로 규정</u>한 경우, 그 기준의 <u>성격이 행정규칙에 불과</u>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04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〇, ×)

: × , → <u>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u>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u>행정규칙의 형식</u>으로 되어 있더라도 관할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p.1000

01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〇, ×)

: 0

02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0

03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 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x , →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하더라도 수형자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u>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의 취</u>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04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 유 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 도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u>임원취임승인취</u>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05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과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임시이사 의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는 적법한 소로 볼 수 없다. (○, ×)

: × ,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소송계속 중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 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이다).

p.1001

0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〇, ×)

 $: \bigcirc$

02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

 $: \bigcirc$

03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〇, ×)

: × ,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 <u>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u>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04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bigcirc$

05 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O, x)

: 0

06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 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

: 0

0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 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 , →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u>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u>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p.1002

01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

: 0

0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된다. (○, ×)

 $: \bigcirc$

03 해임처분 취소소송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 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0

04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 ×)

: 0

05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

: 0

06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

: ()

p.1003

01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 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 ×)

: 0

- 02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있다. (○, ×)
- : \times , → <u>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u>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없다.
- 03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 간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〇, ×)
- 04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도중에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입대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

: 0

05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 \bigcirc$

p.1004

01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〇, ×)

: 0

02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 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된다. (〇, ×)

: × , →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p.1005

01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〇, ×)

: 0

02 소송계속 중 해당 처분이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〇, ×)

: x , →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03 행정청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bigcirc$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〇, ×)

 $: \bigcirc$

p.1006

01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 , →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원고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0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〇, ×): ○

03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폐업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bigcirc, \times)

: 0

04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 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 상 이익이 없다. (○, ×)

gong.conects.com

: 0

05 행정청의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하여도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 (○, ×)

: \times , →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u>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u>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u>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u>하다.

2.

피고

p.1007

0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O, x)

: ()

02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bigcirc, \times) : \times , \rightarrow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03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야 하는 것이다. (○, ×)

: ()

04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

: × , →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 <u>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더라도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u>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징계위원회).

05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〇, ×)

: 0

06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을 피고로 한다. (○, ×)

 $: \bigcirc$

07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법원장이다. (○, ×)

: × , →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이다.

08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

: 0

09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부의장이 된다. (O, x)

: × , →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10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 ×)

: \times , → 처분 등이 있은 후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u>이를 승계한</u> <u>행정청</u>이 피고가 된다.

11 처분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bigcirc, \times) : \times , \rightarrow 처분 등이 있은 후에 <u>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u>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u>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u>가 된다.

p.1008

01 개별법령에 합의제 행정청의 장을 피고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한 행정

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당해 합의제 행정청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다. (○, ×)

 $: \times , \ \underline{\text{output}} \ \underline{\text{output$

0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O, x)

: 0

03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O, x)

: 0

04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 (○, ×)

: × → <u>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 취소소송</u>에서의 <u>피고</u>는 <u>수임청</u>이 된다.

05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O, x)

 $: \bigcirc$

06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 ×)

: 0

p.1009

01 행정권한을 내부위임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인 하급행정청이 된다. (○, ×)

: 0

02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 ×)

 $x : x \to M$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자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는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이때 <u>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하급행정청(수임청 등)</u>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03 서울지방경찰청장(현 서울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지방경찰청(현 서울경찰청)
- ② 서울지방경찰청장(현 서울경찰청장)
- ③ 종로경찰서
- ④ 종로경찰서장
- : ④ , → 상급행정청으로부터 <u>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u>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이 아닌 <u>실제로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u>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u>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종로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u> 04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

05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 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 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대리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〇, ×) : x , →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u>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u>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u>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u>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06 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O, x)

: \times , → <u>처분을 행한 행정청(처분청)과 처분을 통보한 자(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피고는 처분청</u>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07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 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현 국가보훈부장관)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통보 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 ×)

: × , → <u>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재를 한 대통령</u>을 피고로 하지 않고 <u>그 처분을 통보한 자에 불과한 국가보훈처장(현 국가보훈부장관)</u>을 피고로 한 소송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대통령에 있다.

08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

: 0

p.1010

01 처분적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 ×)

: × , → 조례는 원칙적으로 소송대상이 아니나 조례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소송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단, 교육·학례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교육감이 피고이다.)

02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 회이다. (○, ×)

:×,→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0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명징계의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피고 가 된다. (\bigcirc, \times)

 $: \bigcirc$

04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무총리가 피고가 된다. (○, ×)

: ×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 외에도 피고가 될 수 있는바 <u>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피고가 된다.</u> 예컨대, 대통령의 검사임용 거부와 관련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소속장관인 법무부장관이다.

05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 (○, ×)

 $: \bigcirc$

p.1011

01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〇, ×)

: ()

0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여야 한다.(○, ×)

: × , → <u>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u>에는 법원은 <u>원고의 신청에 의하여</u>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03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x)

: × , → 피고경정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04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bigcirc, \times)

: 0

05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bigcirc, \times)

 $(x) \times (x) \to x$ 피고를 경정하는 것에 대한 허가결정이 있을 때에는 <u>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u>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p.1012

01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〇, ×)

 $x : x \to 0$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02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 ×)

: 0

03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

 $: \bigcirc$

p.1014

01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

 $: \bigcirc$

1.

제기요건(소송요건)의 일반론

p.1022

01 기각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O, x)

: \times , <u>기각판결</u> → 소송요건은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서 <u>소송요건이 결여되면 법원은 소각하판결</u>을 한다.

2.

처분(취소소송의 제1대상)

p.1023

0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 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〇, ×)

 $: \bigcirc$

p.1024

01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C

02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〇, ×)

: \times , → <u>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u> 의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u>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u>된다.

p.1025

01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〇, ×)

 $x \to 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u>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u>, 조달청장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u>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법관계</u> 에 해당한다.

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 관념 의 통지에 해당한다.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기관에 의한 <u>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처분성</u> 이 긍정된다.

03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〇, ×)

: ×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청이 행하는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에는 처분성을 긍정한다.

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0

p.1026

0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수 없다.

- 0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〇, ×)
- : × , → <u>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u>은 <u>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u>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0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〇, ×)
- : \times , → <u>국세환급금결정이</u>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u>내부적 사무절차</u>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04 국세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O, x)
- : \times ,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u>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u>은 <u>내부적 사무절차</u>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05 군의관이 수행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그에 따라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bigcirc, \times)
- : × , →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지만 <u>군의관이 행한 징병검사시의</u> 신체등위판정은 아직 국민에게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p.1027

- 01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 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〇, ×)
- : × , →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 02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u>행정처분에 해당한다</u>. → 시험승진후 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u>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u>,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u>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u>.
- 03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 <u>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행위</u>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u>행정처분에 해당한다</u>. → <u>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u> 신청자 중 일부를 <u>추천하지 않는 행위</u>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01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
- : \times →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u>신</u>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u>실</u>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 02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조리상의 신청권으로는 될 수 없다. (\bigcirc, \times)
- : × ,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u>조리상의 신청권으로는 될 수 없다</u>. →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u>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u>. p.1029
- 01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 ×)

- : x →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u>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u>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u>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u>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02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로 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 x , 임용기간 만료로 한 <u>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소송</u>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u>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u>는 <u>재임용</u>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u>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u>. p.1031
- 01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times , \to$ 법률에 의하여 <u>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u>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02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로부터 임용거부를 당하였다면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 ×)
- $x : x \to \frac{1}{2} \times x \to \frac{1}{$

p.1032

- 01 자영업에 종사하는 甲은 일정요건의 자영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행정청에 보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1차 거부되었고, 이후 다시 동일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관할행정청이 다시 2차의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甲은 2차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〇, x)
- : × , 관할행정청에 보조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u>1차 거부되었고</u>, 이후 <u>다시 동일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u>. 관할행정청이 <u>다시 2차의 거부처분</u>을 하더라도 甲은 <u>2차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u> → <u>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반복된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긍정한다).</u>
- 02 판례에 의할 때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한 반복된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bigcirc, \times)
- : × , → 관할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 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01 통설과 판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처분개념에 포함시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 ×)
- : × , →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긍정하나 <u>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u>한<u>다</u>.
- 02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〇, ×)
- : × , → <u>개별공시지가결정</u>은 행정청의 중간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03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 (○, ×)
- : × , → 표준공시지가결정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함이 판례의 입장이다.

04 반복된 제2차 대집행계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 × , <u>반복된 제2차 대집행계고</u>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u>행정처분이다</u>. → <u>반복된 제2차 대집행계고는</u>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p.1034

- 01 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자할 때에는 감액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
- : × , <u>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 감액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u>. → <u>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u>투고자 할 때에는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02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해 감액경정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이다. (○, ×)
- : × , →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해 감액경정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이다. → 감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03 甲은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2011년 10월 1일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동년 10월 15일 2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후 동년 10월 20일 甲에 대한 과징금 부과권한이 A행정청에서 B행정청으로 승계가 되었고, 甲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년 10월 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 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는?
- ① 10월 1일자 과징금 3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 ② 10월 15일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 ③ 10월 1일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 ④ 10월 15일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 ⑤ 10월 15일자 100만원 감액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 : ③ , →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u>감액처분한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u> <u>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따라서 2011년 10월 1일자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과징금 200만원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u>.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u>피고는</u> 승계한 행정청인 B행정청이 된다.
- 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
- : × , → 감액처분으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처분이며, <u>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처분을</u>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p.1035

- 01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해 증액경정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다. (〇, ×)
- : × , → <u>증액경정처분의 경우</u>에는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므로 <u>증액경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u> 대상이 된다.
- 02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

: 0

- 03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〇, ×)
- : × , →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

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04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 ×)

: x .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05 금융기관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frac{1}{1}$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u>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u>. → $\frac{1}{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p.1036

01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차후 징계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하여도 이는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u>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u>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u>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u>. → <u>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u>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0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x)

: × , → <u>재량행위도</u> 행정행위로서 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u>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u>.

03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 ×)

: x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u>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다</u>.

p.1037

01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0

02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 ×)

: ()

0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〇, ×)

: × , → <u>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u>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u>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행정소</u>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01 다음 중 판례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등재자 성명 삭제행위
-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입안권자의 거부행위
- ◎ 지적공부 소관청의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 ◎ 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
- ① ⑦, □, ⑤
- 2 0, 0, 0

③ □, ⊜, 回

④ ⑦, ⊜, ⊚

: ② , →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⑥)도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p.1039

01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 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 ()

02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 ×)

: 0

- 0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u>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u>은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04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
- : × , →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u>감면불인정 통지</u>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 05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행위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처분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
- : × , →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행위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처분이다.
- 06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bigcirc, \times)
- : \times , →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u>민간투자시설사업</u>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p.1040

01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

 $: \bigcirc$

- 01 택시회사들의 자발적 감차와 그에 따른 감차보상금의 지급 및 자발적 감차 조치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감차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감차명령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 ×)
- : × , → 택시회사들의 자발적 감차와 그에 따른 감차보상금의 지급 및 자발적 감차 조치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감차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회사들과 행정청 간의 합의 및 그에 따른 <u>감차명령은</u>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p.1042

01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통보는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 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

: × , → <u>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통보</u>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02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통보에 대한 불복의 소(는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 ×)

: 0

03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

: × ,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u>과학기술기본법</u> <u>령에 따라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u>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u>행정처분에 해당한</u>다.

04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p.1043

0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선 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bigcirc, \times)

: × ,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u>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u> 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02「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〇, ×)

: \times → 공법인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자신의 공행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비납 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u>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부담금액을 산정·고지하는 '부담금 부과 처분'으로서 항고소송</u>의 대상이 된다.

0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혁신도시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bigcirc, \times)

: × , →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내 특정시를 공 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u>행정처분이 아니다</u>.

04 한국마사회의 조교사나 기수에 대한 면허취소·정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〇, ×)

: ×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05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 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 ×)

: 0

- 01 이행통지는 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하여 납골당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향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게 되어 새로이 참가인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이행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
- : \times , →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p.1045
- 01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私法原理)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〇, ×)
- : × , →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u>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u>하는 <u>공증행위에 불과하여</u> 그 효력을 둘러싼 <u>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u> 행위의 근거법률에서 <u>행정소송 이외의 다른</u>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02 (乙은 甲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〇, ×)
- : × , → 토지대장의 기재는,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u>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u>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0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bigcirc, \times)

: 0

- 04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 키므로 행정처분이다. (〇, ×)
- : x , →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u>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u>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01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이다. (○, ×)
- : \times , → <u>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u>는 <u>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u>다.
-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라는 판례와 비교 구별해야 한다.
- 02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행위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 ×)
- : \times , →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u>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u> 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03 甲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〇, ×)
- : × , →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 <u>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측백나무 300주를 식재한 행위</u>는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p.1047

01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O, x)

 $: \bigcirc$

p.1048

- 01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에 관한 소
- ② 국유재산의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소
- ③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에 관한 소
- ④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소
- : ① , → <u>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u>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02 다음 중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 ②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의 배점
- ③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 ④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 ② , → <u>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의 배점</u>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에 대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효과가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p.1049

- 0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대집행상 제1차 계고처분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제3차 계고처분
- ②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 ③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 ④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 ③ , → <u>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u>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재결(취소소송의 제2대상)

- 0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〇, ×)
- : × , 재결취소소송은 <u>처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u>에 한한다. →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
- 02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x)
- :×,→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
- 03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times , <u>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u>. → <u>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u> 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 자체에만 존재하는 위법을 의미하며,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내용의 위법도 포함된다.

p.1052

- 01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제재를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고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times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처분을 영업자에게 <u>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u>,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은 <u>변경된 내용의</u> 당초처분이다.
- 02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
- : ×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u>각하판결</u>을 하여야 한다. → 재결취소소송에 있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재결취소소송을 <u>기각하여야 한다</u>.
- 01 재결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원처분인 지방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 ×)
- : × , <u>원처분</u>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만이 <u>소송의 대상이 된다</u>. → 노동위원회법에서도 <u>원처분</u>이 아닌 재심판정(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제소기간

p.1060

- 01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times , →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u>제소기간의 도과(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u>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 02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〇, ×)
- $x \to y$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03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〇, ×)
- : × , → <u>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u>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u>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u>된다.
- 04 제소기간의 적용에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을 말한다. (○, ×)
- : \times , 제소기간의 적용에 있어 <u>'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u> \to 제소기간의 적용에 있어 <u>'처분이 있음을 안 날'</u>이란 <u>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u>이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p.1061

- 01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 ×)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더라도, 동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어 원고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p.1062

- 01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공시송달)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 ×)
- : \times ,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 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 아야 한다.
- 02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송행위의 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O, x)
- \times , \rightarrow <u>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不變期間)이다. 다만,</u>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2조와 제173조에 따르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u>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추완(추후에 보완하는 것)할 수 있다.</u>

p.1063

01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〇, ×)

: 0

- 0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bigcirc, \times)
- : × , 취소소송은 <u>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u>이 경과하면 → 취소소송은 <u>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u>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 p.1064
- 0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준과 처분이 있은 날 기준이 모두 경과하여야 제소기간이 종료된다. (\bigcirc, \times) : \times , \rightarrow 90일과 1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02 (A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〇, ×)
- : \times → <u>행정심판을 거쳐</u>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u>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u>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2022. 4. 2.이 취소소송의 기산점이 된다.
- 03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 ×)
- : \times , 여기서 말하는 '<u>행정심판'은</u> 행정심판법에 따른 <u>일반행정심판만을 의미</u>한다. → 여기서 말하는 '<u>행정심판'은</u> 행정심판법에 따른 <u>일반행정심판과</u>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을 의미한다.
- 04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〇, ×)
- : \times , → 처분의 <u>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u>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u>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 못 알린 경우</u>,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u>제소기간</u>이 행정심판의 <u>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u>

- 0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〇, ×)
- : × , → <u>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u>은 취소소송의 <u>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u>
- 0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 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
- : × , → 행정처분이 있음을 <u>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u>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u>각</u> <u>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u>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03 (甲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甲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있었다) 甲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 : × ,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소 종류변경의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

하였는지는 처음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p.1066

01 어느 하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 ()

- 02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
- : × , →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된다.
- 03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bigcirc, \times) : $\times \to \overline{9}$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 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

p.1067

- 01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x)
- : × ,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이나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칠 것이 요구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등의 개별법 은 필요적 전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u> 된다.

- 01 기간경과 등의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하지 않고 기각재결을 한 경우는 심판전치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igcirc, \times)
- $: \times , 7$ 기간경과 등의 <u>부적법한 심판</u>제기가 있었고 $\to \overline{0000}$ <u>행정심판전치주의에 있어 행정심판이란 적법한 심판청구를 의미하므로 기간경과 등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본안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u>
- 02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bigcirc, \times)
- 03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 ④ , → <u>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u>는 <u>행정심판</u>을 제기는 하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04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만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x)

 $x : x \to 0$ 에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p.1069

- 01 판례에 의하면 둘 이상의 심판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bigcirc, \times)
- : × , → 관계법령이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u>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u> 통설은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제도의 취지가 행정청에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만 거치면 족하다고 본다.
- 02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제3자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행정심판전치주의 가 적용되지 않는다. (○, ×)
- : × , 제3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u>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u>에 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03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 × , →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심절차(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도 소송절차가 사실심변론종결 전이라면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소의 변경

p.1070

- 01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〇, ×)
- $x \to 4$ 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0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피고의 변경을 수반하는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O, x)
- : × , → 행정소송의 종류가 다양하여 소의 종류를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소의 종류의 변경은 <u>피고의 변경을</u> 수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과 구별된다.

- 01 법원은 소의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 ×)
- : \times , → 법원은 소의 번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u>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u>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u>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u>할 수 있다(소변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의 직권으로는 행해질 수 없다).
- 0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 ② 1심 법원의 판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 ③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 ④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
- ⑤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간의 소의 변경은 물론,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 : ② , → 소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한데 사실심이라 함은 1심, 2심을 말하고 법률심이라 함은 3심인 대법원을 말한다. 따라서 1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math>2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변경은 가능하다.
- 03 소의 변경에 따라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피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 ×)
- : \times , → 법원은 소변경을 허가함에 있어 피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u>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u> <u>야</u> 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2항).
- 04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O, x)
- : × , → <u>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u>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다른 항고소송이나 당 사자소송으로 변경하거나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

p.1072

- 01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결정 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 ×)
- : \times , → 법원은 <u>행정청이</u> 소송의 대상인 <u>처분을</u> 소가 제기된 후 <u>변경한 때</u>에는 <u>원고의 신청에 의하여</u>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4.

소제기의 효과

p.1073

- 01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대상처분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 ×)
- : × , →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이 원칙이다(집행부정지원칙).
- 02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한다.(〇, ×)
- : × , →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 03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나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 ×)
- 04 취소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은 민사소송상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 : \times , → 취소소송에 있어 <u>집행정지신청</u>은 민사소송상 가처분과 달리 <u>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신청</u>할 수 없다.
- 05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안청구의 적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 × , <u>집행정지는 본안청구의 적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u> → <u>집행정지는</u>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u>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u>을 요건으로 한다.

- 01 (A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〇, ×)
- :×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02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 무효인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u>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인 경</u> 우에도 허용된다.

03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와 관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안으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 ×)

: × , → <u>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인 경우에만 허용되고</u>,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정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04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x : x \to y$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u>'회복하기 어려운 손해'</u>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u>행정심판법</u>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u>'중대한 손해'</u>를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p.1075

01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 ×)

 $: \bigcirc$

p.1076

01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〇, ×)

 $: \bigcirc$

0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〇, ×)

: \times , <u>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u> → <u>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u>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행해진다.

03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

: 0

p.1077

0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

02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 청인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bigcirc, \times)

: \times , <u>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u> → <u>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u> 다.

p.1078

0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그 효력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정지, 처분 등의 집행정치, 절차속 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있다. (○, ×)

: 0

02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종기의 도래로 인하 여 집행정지가 실효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 ×)

: 0

- 03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집행정지결정에도 준용된다.
- 04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
- : \times , → <u>집행정지결정</u>이 있는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u>관계행정청에 대하여도 법적</u> 구속력이 발생한다.

p.1079

- 01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지만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 ×)
- : × ,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지만 <u>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u> <u>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u> → <u>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u>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

p.1080

- 01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임시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 ×)
- : x →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시처분제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 0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 ×)
- : \times , → <u>항고소송</u>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만 가능할 뿐 <u>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u>다.

1.

소송요건

p.1132

- 01 무효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〇, ×)
- : × , → <u>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u>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02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에서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양도자는 허가관청을 상대로 위 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 : \times , → <u>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u>가 <u>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u>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03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 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

: 0

p.1133

- 01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취소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 (○, ×)
- : x ,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02 처분의 상대방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을 거쳐야 한다. (○, ×) : × , → 무효등확인소송은 개별법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u>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행</u>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03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의 하자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 ×)
- : × , →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는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 <u>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u>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2.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p.1133

- 01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적용된다. (○, ×)
- : ×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제도가 인정되는바, <u>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u> <u>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u>.

3.

소송의 심리

- 0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〇, ×)
-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그 행정처분

<u>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u>이 있다.

4.

판결 및 소송의 종료

p.1134

01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〇, ×)

: × , → 처분의 무효 등을 확인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p.1135

01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〇, ×)

: \times ,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u>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u>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02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x)

: \times , → 취소소송에는 사정판결이 허용되나, <u>무효등확인소송은</u>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사정판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cdot 판례의 입장이다.

03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 ×)

: × , →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4조는 무효등확인판결에 준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u>거부처분</u>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04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무효확인판결에도 준용되므로, 무효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심 수소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

: \times , → <u>행정소송법에는 간접강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다</u>.

5.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p.1135

01 甲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A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A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무효확인판결을 하여야 한다. (〇, ×)

: x , 당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결과 그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통설과 판례는 이른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02 무효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형식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

: \times , → 무효인 행정행위는 <u>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u>에서 그 <u>취소를 구하는 형식의 소를 제기할 수 있</u> <u>다</u>.

p.1136

0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bigcirc, \times)

: \times , →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는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예컨대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u>과세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u>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0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0

03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〇, ×)

: 0

04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서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

: 0

05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한다.

: ()

p.1137

01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⑤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과 ⑥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Û
 ①
 Û

 ①
 무효
 각하
 ②
 무효
 기각

 ③
 취소
 각하
 ④
 취소
 기각

: ④ , → 처분 후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러한 처분은 <u>취소사유</u>가 있는 처분이 된다. 한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u>기각판결</u>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p.1138

0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 행정심판과의 관계
- □ 제소기간
- © 집행정지
- ◎ 사정판결
-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① ⑦, ⊜
- 2 7, 0, 0
- ③ ⑦, □, □, □
- (4) (7), (C), (C), (C)
- : ② , → <u>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③ 행정심판과의 관계(행정소송법 제18조), ◎ 제소기간(동법 제20</u>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동법 제34조)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gong.conects.com

그러나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 집행정지(동법 제23조), 📵 사정판결(동법 제28조)에 관한 규정은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7.

소송요건

p.1139

- 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
- : ×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 02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O, x)
- : × , → 행정청이 행한 <u>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u>은 그 명령 이후에 그 <u>원인사유가 소멸</u>하였음을 들어 행 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p.1140

01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된 부작위라는 위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bigcirc$

p.1141

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 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 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x)

: ()

- 02 법률의 집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 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O, x)
- :×,→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

: 0

04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x)

 $: \bigcirc$

p.1142

cafe.naver.com/sunnylaw

- 0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bigcirc, \times)
-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20조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준 용되지 않으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준용된다.
-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 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〇, ×)

: × , → <u>부</u>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8.

소송의 심리

p.1143

- 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본안심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의 입장이다. (O, x)
- : \times , → <u>판례는</u>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실체적 내용까지는 심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소극설(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 02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단순히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적부에 관한 절차적 심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지도 심리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 을 해야 한다. (○, ×)
- $: \times , \ \underline{0809} \ \underline{940} \ \underline{090} \$

p.1144

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점의 법적·사실적 상황을 근거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

 $: \bigcirc$

02 판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A)과 거부처분취소소송(B)에 있어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각각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결시
결시
걑

(\(\)

- : ②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u>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u>이고,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 : × , → <u>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u>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경우는 준용이 되나, <u>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관한 규정</u>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 종류변경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9.

법원의 판결

- 01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 (○, ×)
- : \times , →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u>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확인판결)이 확정</u>되면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 02 도로법 제61조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도로관리청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②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③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甲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 : ③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작위가 아닌 작위, 즉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뿐만 아니라 거부처분을 하는 것 또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 된다.
- ① 도로점용허가는 설권행위(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②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신청에 따른 특정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의 실체적 내용까지는 심리할 수 없다고 한다.
- ④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즉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